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30 선고 2023가단2275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우

담당변호사 조아현

변 론 종 결 2024. 5. 16.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2021. 5. 1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6,8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8. 26.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360367 양수금 사건에 대한 판결(주문 : C은 원고에게 34,745,786원 및 그중 21,285,332원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판결이 2022. 9. 22. 확정되었다.

나.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21. 5.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중 한명인 C의 상속분은 2/13이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5. 1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2021.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C은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2/13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12,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C은 이 사건 협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양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C이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C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무상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C은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 중 C의 지분(2/13)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C의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고 C에게 합의서체결을 요청한 2022. 2. 11.부터는 이 사건 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6. 8.에야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 무렵에 이 사건 협의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망인이 C에게 생전에 80,000,000원을 증여하였는데 그 수증금액이 C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양수금채권 중 일부 이자채권(2018. 10. 31.부터 2020. 6. 7.까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도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항변을 그 판결 확정 이후인 이 사건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

(1)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와 가액반환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갑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21. 8. 12.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75,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2021. 10. 29.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2008.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F 명의의 채권최고액 100,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21. 8.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2/13)을 원래대로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갑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5. 30.까지의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액은 42,947,294원이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시가는 매도금액인 275,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00,800,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74,200,000원(= 275,000,000원 - 100,800,000원)이고, 그 중 C의 2/13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26,800,000원(= 174,200,000원 × 2/13)이 된다. 그리고 C의 담보가액 26,800,000원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42,947,294원보다 적으므로, 그 중 적은 금액인 담보가액 26,800,000원이 가액반환 범위가 된다.

(4)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의는

26,8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위 2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

별지